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
- G20 금융규제감독-

2014년 10월 13일

김 용 덕
Kim, Yong Duk

Contents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Ⅱ G20 금융규제·감독강화 논의

Ⅲ 남겨진 과제 및 향후 전망

Ⅳ 우리의 당면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피해

전세계 주가(MSCI지수)
2008년 중 42%↓

실질GDP 성장률
2009년 선진국▽3.4% (IMF)

전세계 금융부실
약 2.2조 달러(IMF)

전세계 실업자
3,000만 명 이상 발생
(IMF · ILO)

시가총액 추이(07.6말 → 09.6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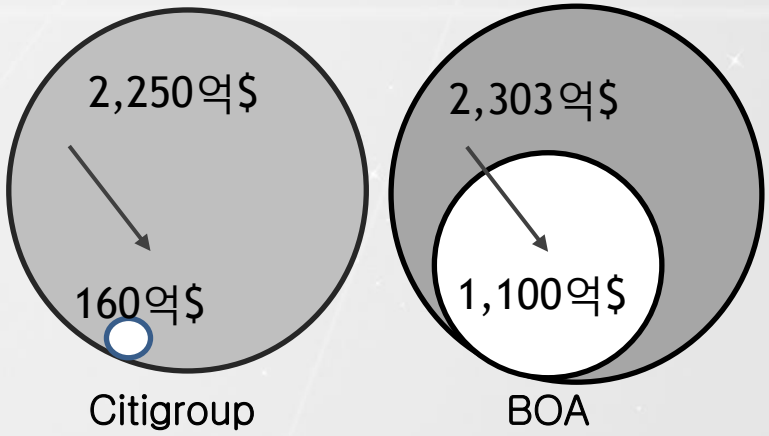

대형 글로벌금융회사 위기사례

Merrill Lynch(美)	08. 9.14	매각(BOA 인수)
Lehman Brothers(美)	08. 9.15	파산
AIG(美)	08. 9.16	구제금융
RBS(英)	08.10.13	구제금융
ING(네덜란드)	08.10.19	구제금융

감독규제측면에서의 금융위기 원인

- Systemic Risk 고려 부족
- 경기 順應性 (Pro-cyclicality)
- 투명성 미흡
- Risk Mgmt 부적절
- 국제금융기구 대응한계

08.9월 Lehman Brothers 파산

글로벌금융위기

금융위기의 원인 1. Systemic Risk 고려 부족

- 규제 받지 않는 금융기관/상품의 증가: 헤지펀드/장외파생상품/Shadow Banking
  - 거대다국적 금융회사(G-Sifi), 신용평가회사
- 금융기관 자본금 적립 수준 등 금융회사 자체 위험관리 취약
- 거시건전성(Macro-prudence) 측면의 통합감독체계 미비

Growth in Global Shadow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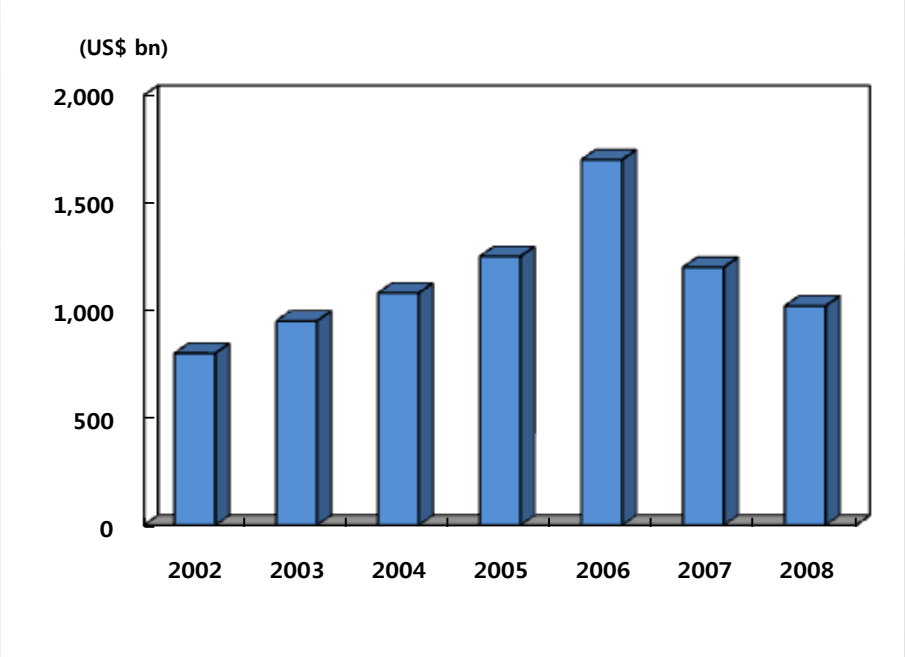

* Shadow banking: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B, Hedge Funds, SIVs, Conduits, MMF, Monoline, etc)

Northern Rock's Le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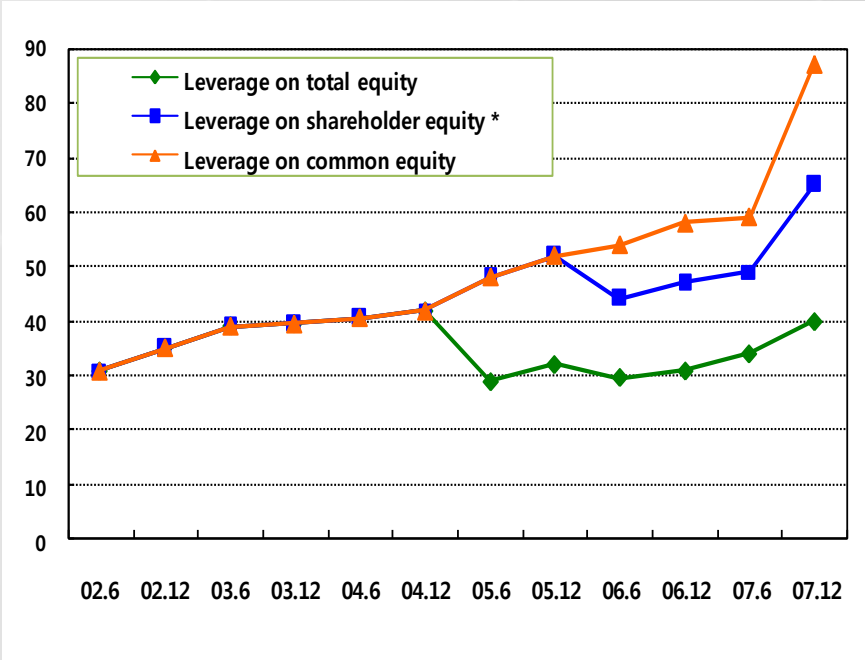

* Shareholder equity : common equity + preferred stock

* 표: 기획재정부

금융위기의 원인 2. 경기 순응성 (Pro-cyclicality)

- 호황기 과다한 Leverage 축적과 불황기 급격한 Deleveraging
- 급격한 Deleveraging은 자산가격 폭락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 야기

경기순응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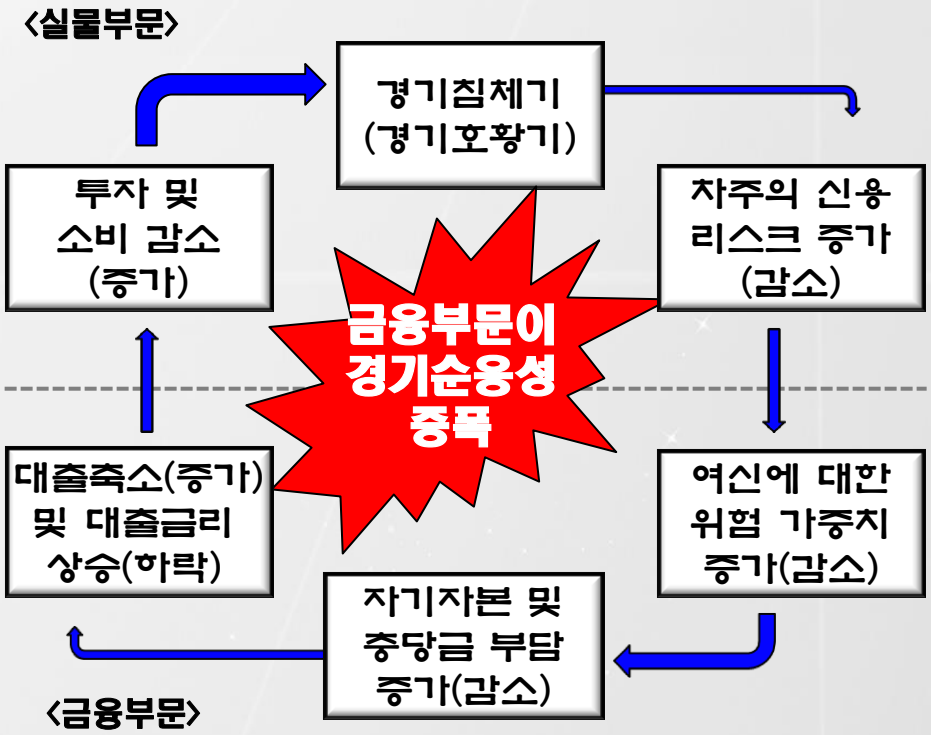

경기 순응성 발생원인

1. 경영참가자의 과도한 단기 이윤 추구 행위
   (예: 경기호황기의 무리한 시장점유율 확대)
2. 리스크측정시 장기 경기상황 미 반영
   (예: 발생손실에 기반한 충당금 설정 등)
3. 바젤 II와 같은 Risk-sensitive한 자본 규제 특성
4. 시장참가자 군집행위 (herd behavior)
   (예: PF대출 편중, 주거용부동산 대출 편중 등)

자료: 금융감독원

[참고 1] 미국의 Pro-cyclicality 관련 지표

경제성장률과 민간신용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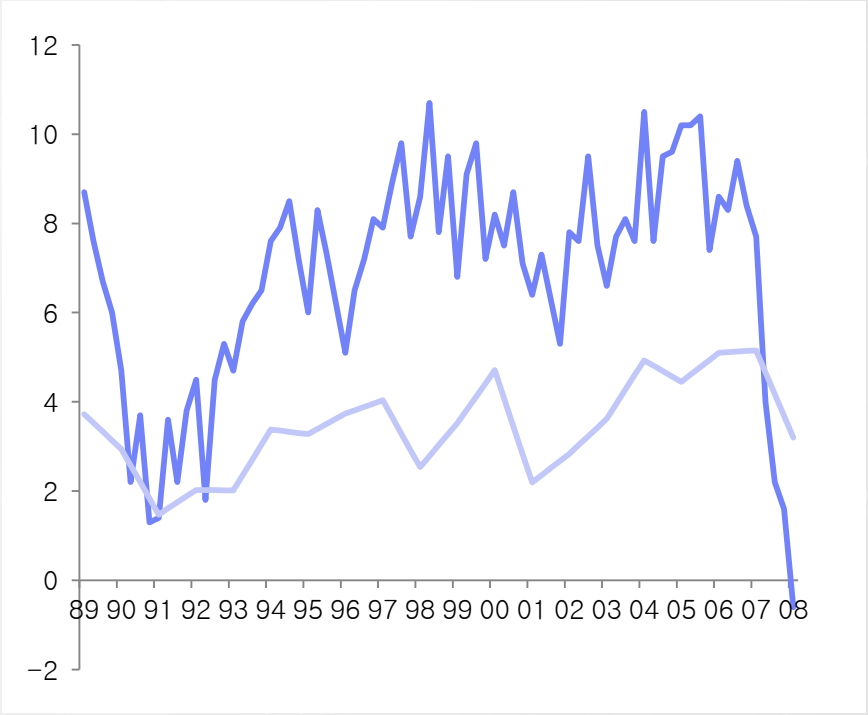

미국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경기순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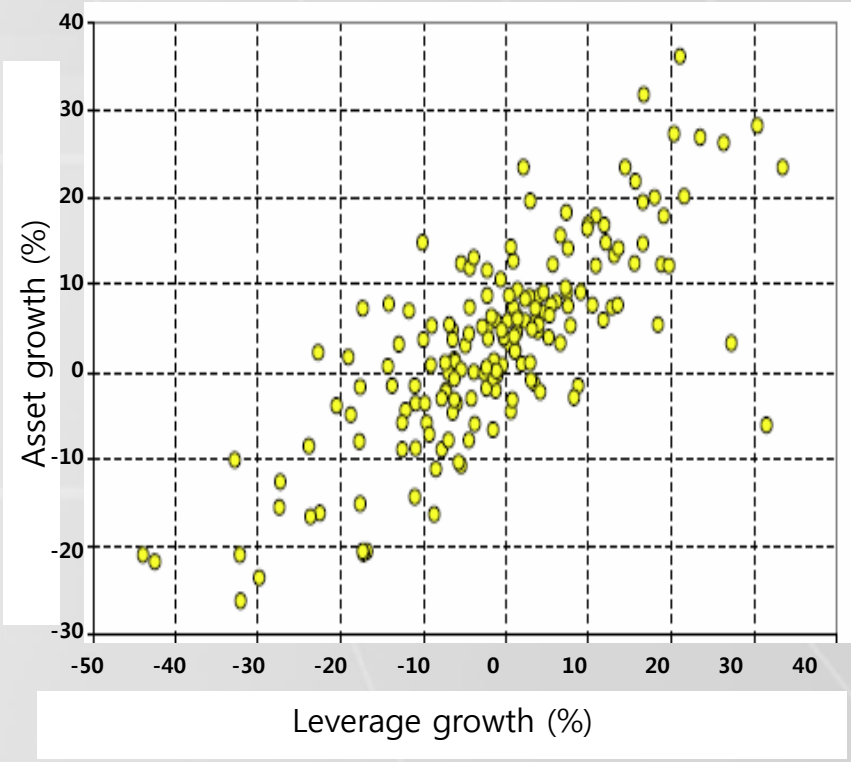

* 표: 기획재정부

금융위기의 원인 3. 투명성(Transparency) 미흡

- ❖ 금융시장, 상품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 ❖ 리스크 소재가 불분명한 상품 증가 → 재무제표 상 부외거래로 표시
  - ✓ 우발채무, 복잡한 구조화 상품, 장외파생상품, 그림자금융 등

Global CDO Issu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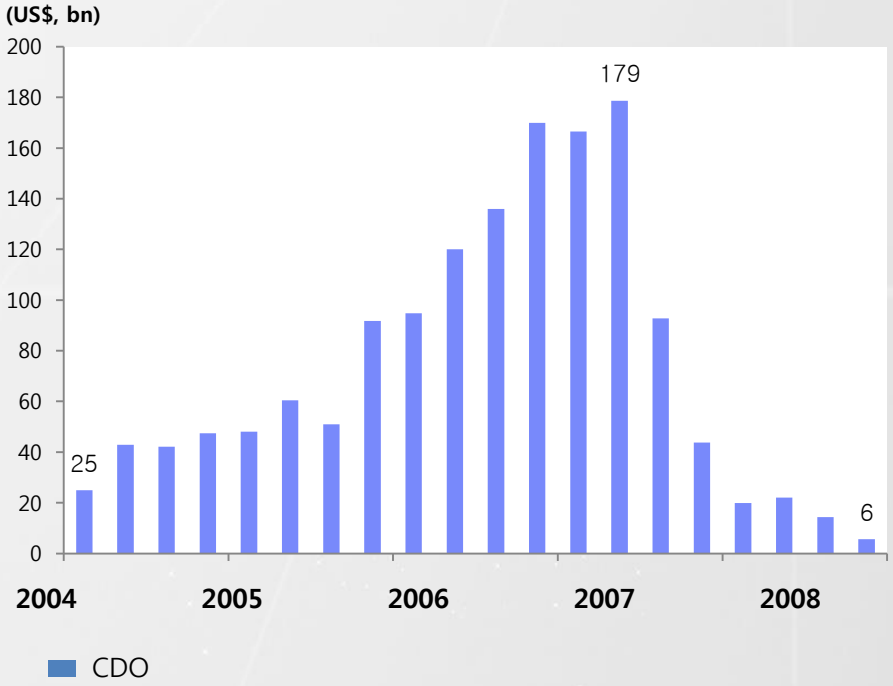

OTC derivatives volume by product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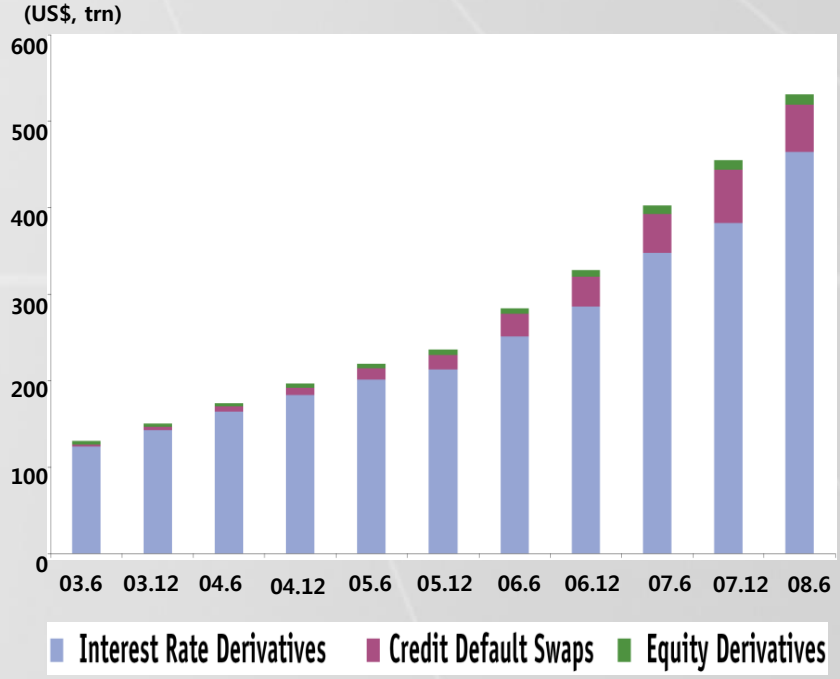

* 표: 기획재정부

[참고2]Increasing complexity of securitized credit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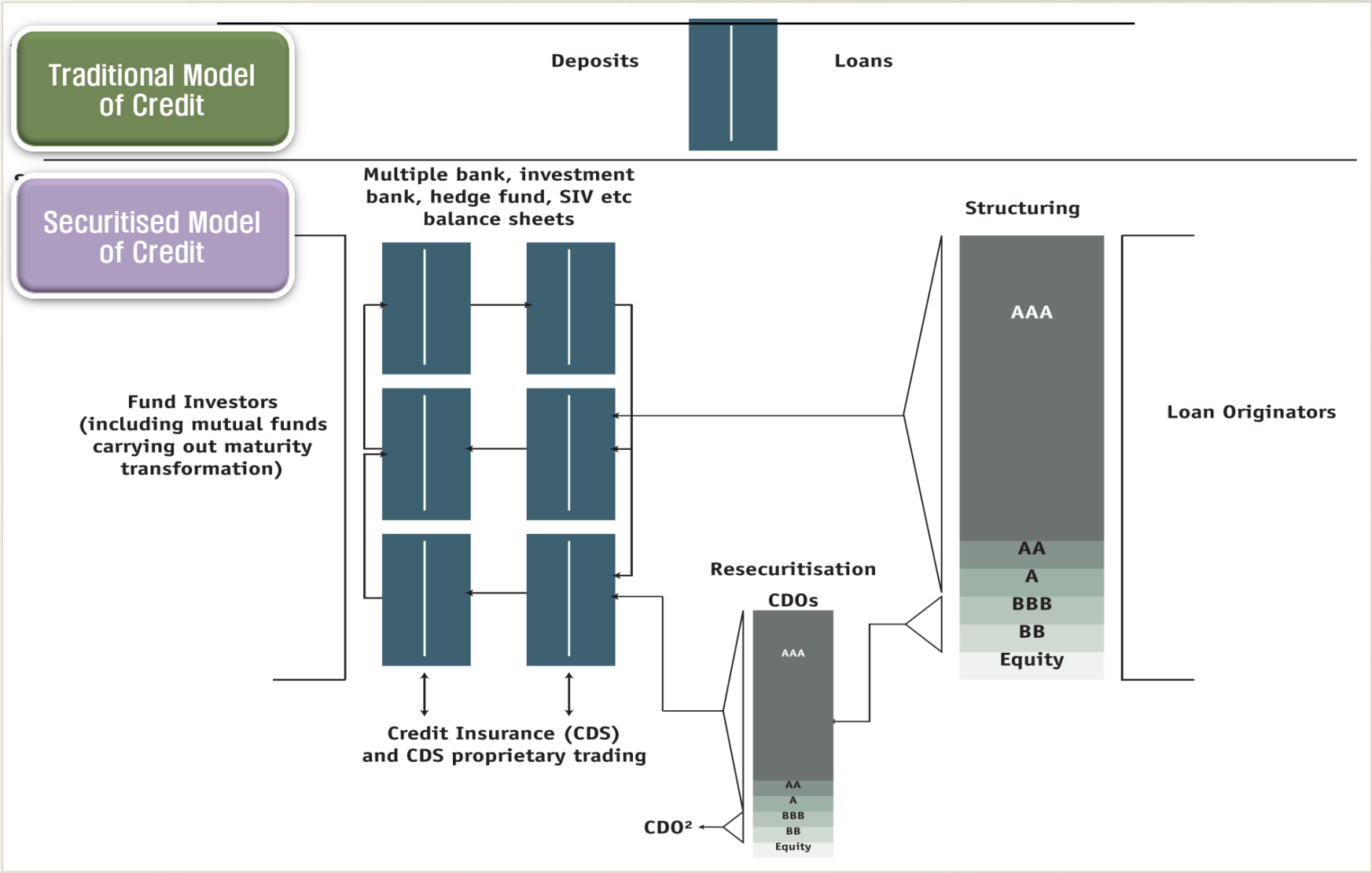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금감원

금융위기의 원인 4. 단기 보상체계와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 단기적, 비대칭적 보상체계
- VaR등 위험관리모형의 한계
-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미비
- 위험관리에 대한 당국의 감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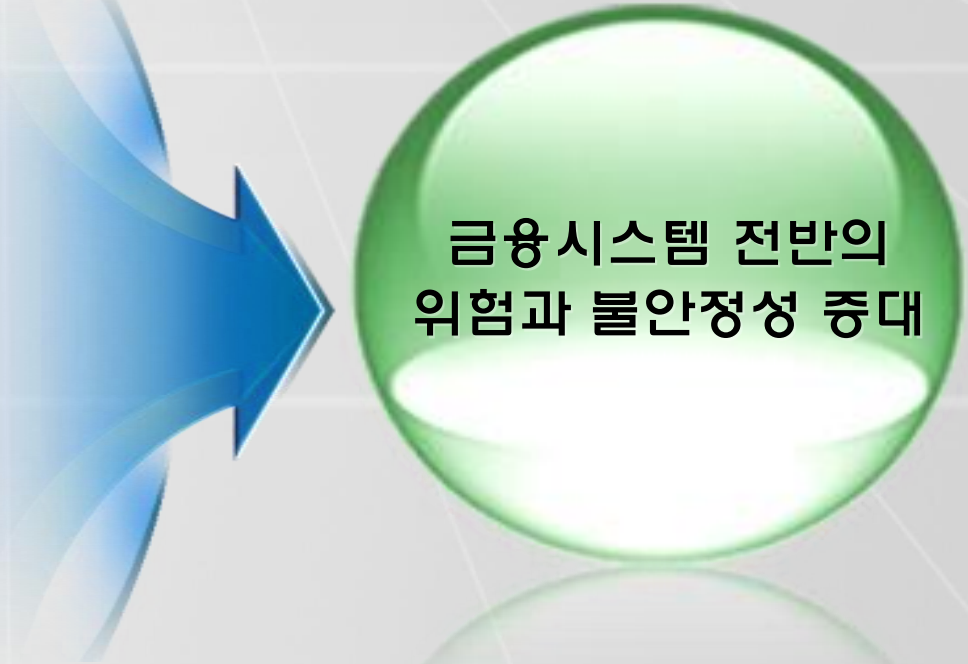

금융위기의 원인 5. 국제금융기구 대응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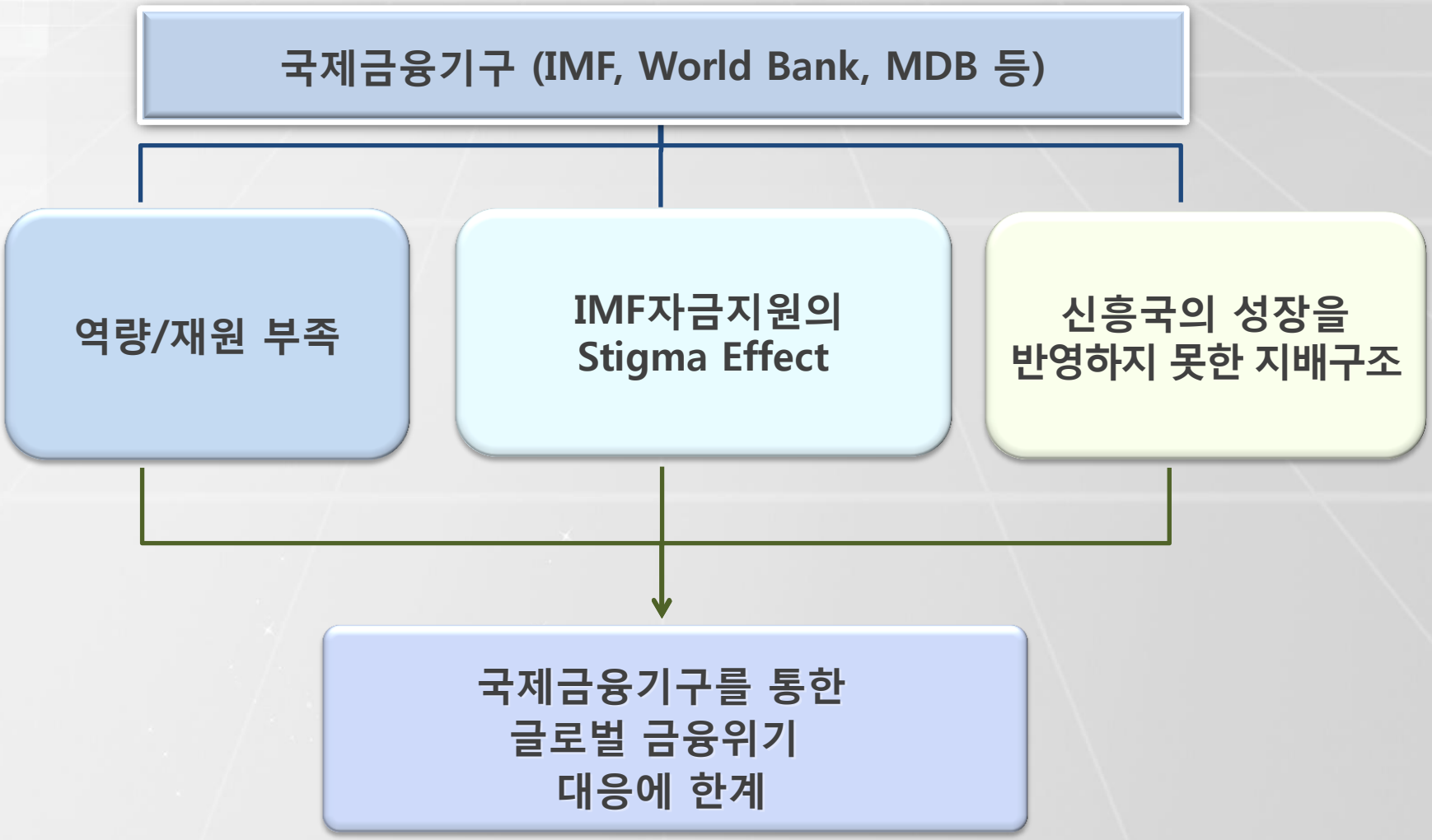

Contents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Ⅱ G20 금융규제감독 강화 논의

Ⅲ 남겨진 과제 및 향후 전망

Ⅳ 우리의 당면과제

글로벌 금융규제개편 추진체계

-< 주 제 >-

1. 은행산업 규제
   - 1-1 미시건전성
     - 가. 자본규제(BIS ratio) 강화
     - 나. Leverage 비율 규제 도입
     - 다.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라. 위험자산 포괄범위 확대
   - 1-2. 거시건전성
     - 가. Capital buffer 보강
     - 나. 회계제도 및 충당금 제도
     - 다. G-SIBs 관련규제
2. 금융회사 보상체계
3. 규제사각지대
   - 가. 헤지펀드
   - 나. 장외파생상품
   - 다. 그림자금융
   - 라. 신용평가사
4. 금융권 책임분담 - 은행세
5. 비협조적 지역 – 역외금융센터

1. 은행산업 규제 – 1-1 미시건전성 가. 자본규제(BIS ratio) 강화

규제수준 (quantity) 대폭 강화

기존 (8%)

보통주 자본비율	Tier1 비율	BIS비율 (Tier1+Tier2)
2%	4%	8%

- Tier 1: 보통주 (common capital) + 이익잉여금(retailed earnings)
- Tier 2 : 우선주 등 신종자본증권 중 만기나 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증권 인정

개편 방안 (최대 16.5%)

보통주 자본비율	Tier1 비율	총자본비율 (Tier1+Tier2)	+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	SIFI 추가자본
4.5%	6.0%	8.0%		2.5%	0~2.5%	1~3.5%

자본의 질 (quality) 대폭강화

➢ **자본인정 요건 강화**
→ 중도상환유인(금리 step-up) 등 금융기법 활용불가

➢ **자본 계산방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차감 조정항목 정형화

➢ **보통주 이외 자본의 손실분담 강화 : 공적자금 투입 시 상각**
→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 도입

주: 1988년 국제결제은행산하 바젤위원회, 'Int'l Convergence of Capital Management & Capital Standards '("바젤 I ") 제정
→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자기자본 보유 의무화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8%↑)

[참고 3] 자본규제 도입 일정

유형별 자본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저보통주자본 (A)	3.5%	4.0%	4.5%					
최저 Tier1 자본 (B)	4.5%	5.5%	6.0%					
최저 총자본 (C=B+Tier2)	8.0%							
자본보전 완충자본(D)				0.625%	1.25%	1.875%	2.50%	
경기대응 완충자본(E)				0.625%	1.25%	1.875%	2.50%	
총자본 (F=C+D+E)	8.0%	8.0%	8.0%	9.25%	10.5%	11.75%	13.0%	
SIFI 추가자본 (F+최대3.5%)	8.0%	8.0%	8.0%	12.75%	14.0%	15.25%	16.5%	

나. Leverage 비율 규제 도입

기존

- 총 여신에서 제외되는 자산
  -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 증권화된 유동화 자산
  - ✓ 파생 상품 등

-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
  (BIS 차원의 규제 미비)
  - ✓ 미국,캐나다 : 규제지표로 운용
    (미국 3~4%, 캐나다 20~23배)
  - ✓ 한국 : 단순 자기자본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주요지표로 활용

개편 방안

➢ 레버리지 비율 = $\frac{\text{Tier 1 자본}}{\text{총 Exposure}} \geq 3\%$

❖ 총 여신 포함 범위확대: 기존 제외항목 포함
  ➢ 총량적 자산성장 억제 목적

❖ 총 Exposure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 적용 없이 명목금액으로 측정

- '11년부터 감독당국이 비율 모니터링
- '15년부터 비율 대외 공시
- '18년부터 규제비율로 적용

다. 위험자산 포괄범위 확대

기존	개편 방안
• Trading Book에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부과 (규제 arbitrage 발생)	➢ 강화된 자산평가방식(Stressed VaR) 도입 ➢ 시장리스크 자기자본산출 기준 재검토
• 유동화 익스포져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자본부과 불충분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상향 ➢ 유동화 Exposure 실사기준(due diligence)신설 및 재 유동화 Exposure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 ➢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상품 거래 유도

규제비율 상향, 자본의 질 제고, 위험포괄범위 확대 등으로 보통주 자본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 효과

라.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기존 — 국가별로 유동성비율 규제방식 상이(BIS 차원의 규제 미비)

- ✓ 영, 독, 프 : 7일, 1개월, 3개월 등 기간별 유동성비율 규제
- ✓ 미, 일 : 질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
- ✓ 한국 : 1개월 원화유동성비율 규제(1개월 내 만기도래 유동자산 / 유동부채)

개편 방안 — 위기상황을 반영한 유동성비율을 국제기준으로 도입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text{LCR} = \frac{\text{고유동성 자산 (level1 + level2)}}{\text{순 현금유출 (cash outflow − cash inflow)}} \geq 100\%$$

- 만기 30일 이내의 단기 유동성 비율
- Level 1 : 현금, 현금성자산, 시장성있는 국채
  Level 2 :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
- 위기 시에는 고유동성 자산 사용으로 인해 100% 하회 인정 ('13.1월 합의)

순 안정자금조달비율(NSFR)

$$\text{NSFR} = \frac{\text{안정자금 인정금액 (부채 및 자본)}}{\text{안정자금 필요금액 (자산)}} \geq 100\%$$

- 안정자금 필요금액
  : 보유자산 중 1년 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금액
  (대출의 roll over, 유가증권 판매 불가능 규모 등)
- 안정자금 인정금액 : 자본및 부채(예금, 도매자금 등) 중 1년 이상 이탈되지 않고 유지되는 금액

→ ▪ '12년부터 감독당국 앞 보고
▪ '15년부터 규제비율로 적용
('15년 60%에서 매년 10%씩 상향, '19년 100%)

→ ▪ '13년부터 감독당국 앞 보고
▪ '18년부터 규제비율로 적용

주: LCR(Liquidity Coverage Ratio)/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참고 4] Leverage 및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일정

<table>
<tr><th></th><th>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
<tr><td>레버리지 비율</td><td colspan="2">감독당국
모니터링</td><td colspan="4">병행운영기간
('15년부터 공시)</td><td>조정
(2017년
상반기)</td><td colspan="2">Pillar 1 이행</td></tr>
<tr><td>유동성
커버리지비율
(LCR)</td><td colspan="4">관찰기간</td><td colspan="5">규제 도입
(60%) (70%) (80%) (90%) (100%)</td></tr>
<tr><td>순안정자금조달
비율(NSFR)</td><td></td><td colspan="5">관찰기간</td><td colspan="3">규제 도입</td></tr>
</table>

1-2. 거시건전성 가. Capital buffer 보강

기존

- BIS 8%자기자본 규제만 충족 (추가자본 적립요구 없음)

→ 현행 자본규제 수준으로는 위기 발생시 대응력 한계

개편 방안

자본보전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 보통주 자본으로 2.5% 추가적립 필요
(상시 적용, 모든 금융기관 대상)

경기대응 완충자본 (Counter-cyclical buffer)

➢ 자산 확장기에 0 ~ 2.5% 추가자본 부과 가능
(시점 별로 적용수준 상이)

- ’16년부터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19년부터 전면 이행
-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

1-2. 거시건전성 나. 회계제도 개선과 충당금제도 강화

논의배경

공정가치 평가	→ 경기순응성 확대
충당금 적립	→ 경기순응성 확대
기준 복잡성 (부외거래 등)	→ 금융시장 투명성 감소
회계기준간 차이	→ 국가간 비교 곤란 규제차익 존재

G20 합의

- 공정가치 평가 축소
- 미래 예상 손실반영 충당금 적립
-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부외거래 확대
- IASB와 FASB 기준 수렴 ('13년 중)

추진 현황

	IASB	FASB	기준수렴 방향, 일정
공정가치평가	• 공정가치 평가 축소	• 공정가치 평가 유지	• IASB 방향 ('13년 중)
충당금 적립	• 미래 예상 손실 반영	• 미래 예상 손실 미반영	• IASB 방향 ('13년 중)
연결	• 연결범위 확대	• IASB와 유사	• 기준 수렴 ('13년 중)
제거	• 복잡성 완화 (RP ; 부외거래)	• 제거요건 명확화 (RP : 재무제표 포함)	• FASB 방향 ('13년 중)

*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SA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2. 거시건전성 다. G-SIBs 규제

기존

- 모든 은행에 대한 획일적 규제체계
- 대형 중요은행 (SIBs) 부실화 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 Too-big-to-fail 문제 발생

개편 방안

SIBs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강화

- 추가자본 부과 : 1.0~3.5%
- 보통주(CET1)만 적격 자본으로 인정 예정

차별적 감독 강화

- Stress test, Early Intervention, 강화된 리스크 보고 체계 등

신속하고 안전한 정리체계 마련

- 정리이전 자본확충을 통한 구조조정
- 개별은행 차원의 정리계획(living will)수립
- 국제적 정리법률 체계 구축 등

- '16년~'18년 중 단계적 이행
- '19년부터 전면 시행

[참고5] 금융규제의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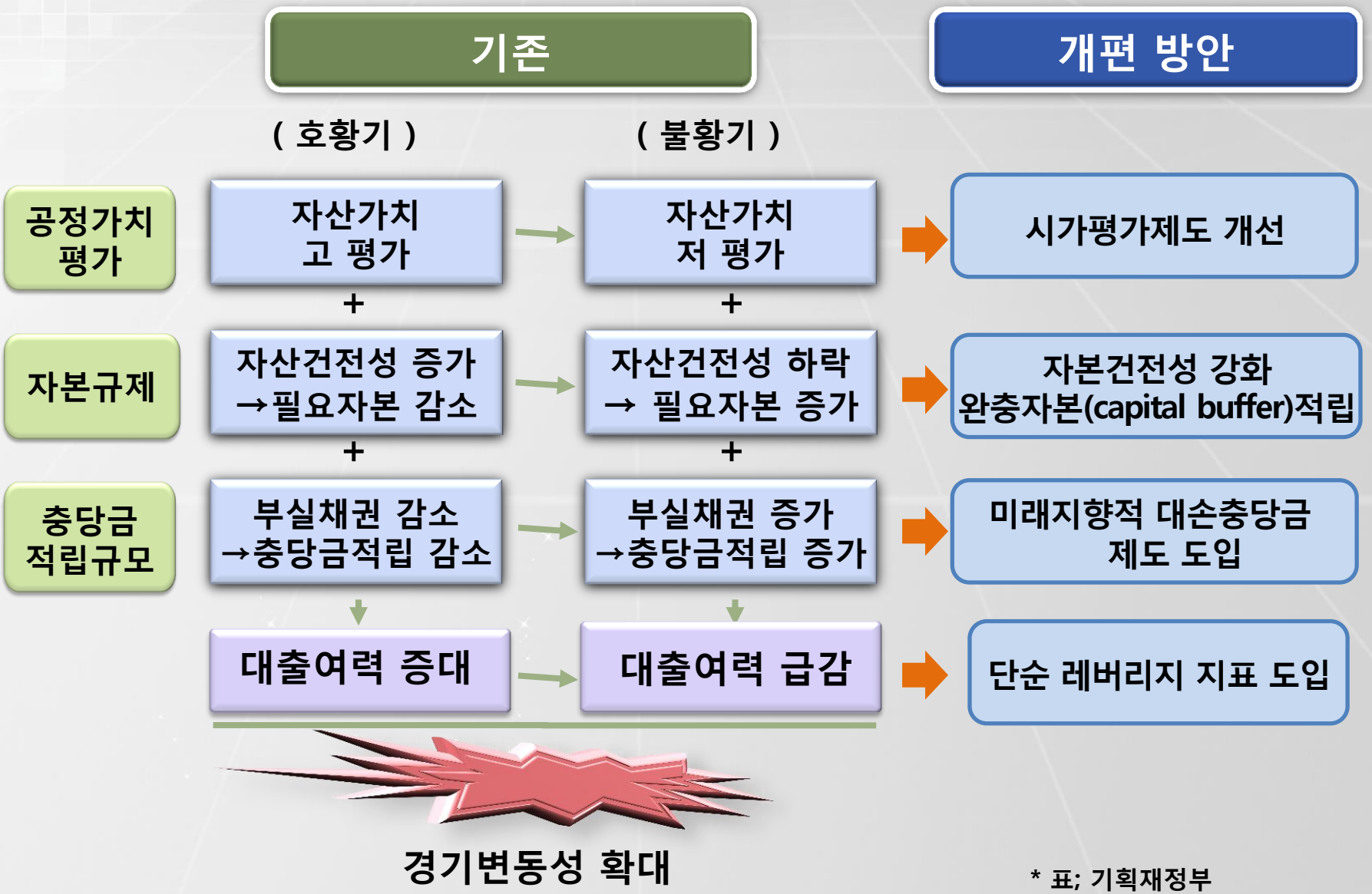

* 표; 기획재정부

2. 금융회사 보상체계

논의 배경

단기적 이익추구 / 비대칭적 보상체계 → 과도한 리스크 Taking → 금융시스템 안정 저해

G20 합의

❖ FSB 보상원칙(런던 정상회의)과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피츠버그 정상회의) 채택

	FSB 보상원칙(09.4월)	FSB 보상원칙 집행기준(09.9월)
지배구조	• 이사회가 보상체계 감독 • 리스크 관리조직은 사업분야와 독립된 별도의 보상체계 구축	• 이사회내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설립 • 리스크 담당 직원의 보상은 다른 사업 분야와 독립적으로 결정
보상구조	• 보상구조 : 리스크에 상응 • 지급기간 : 리스크 보유기간 고려 • 지급방법 : 현금,주식등	• 보너스 40~60%, 지급연기(deferral) • 보너스 50%, 현금외 주식 등으로 지급 • 부정적 영향 발생시 환수(claw back) • 보장된 상여금 지급 금지
공시/감독	• 보상관련 정보 공표 • 당국의 리스크 평가시 보상 포함	• 보수액, 보너스 금액 및 형태, 지급연기된 보상액 등을 공시
미이행 제재	–	• 미이행 금융기관에 교정조치 실시 • 자본수준 미흡시 보너스 제한

추진 현황

FSB는 10년, 11년 두 차례 각국의 이행상황 점검(peer review) 결과 발표

G20 칸느정상회의(11.11월)시 FSB가 보상원칙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공시 요청

3. 규제사각지대 – 가. 헤지 펀드 규제

논의배경

❖ 개별 헤지펀드 : 리스크 小
herd behavior : 시스템리스크 초래

; 그러나, 규제·감독 부재/정보 부재로 시스템리스크 파악에 한계

* 헤지펀드(불) :07말 2.2조, 08말 1.5조, 12말 2.1조

G20 합의

❖ 투명성 증대
- 헤지펀드나 그 운영자 등록
- 시스템리스크 판단 위한 정보공개

❖ 리스크 관리 강화
-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은행 등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강화

추진 현황

❖ IOSCO : 등록, 정보공개 등에 관한 헤지펀드 감독 6개 원칙 발표(09.6월)

❖ G20 각국은 합의사항 이행중
- 美 : 등록(1억불 이상),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 EU : **제 3국에서 설립된 펀드에 대해 EU passport 허용 등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안 합의(10.10월)**
  - ✓ EU의 최소한 규제기준 + 각국과의 정보교환 조건
  - ✓ 그 외 자본비율 요건 설정, 레버리지 비율 제한, 유럽지역 은행 임원보너스 제한과 유사한 보수규정(renumeration rules) 등 포함

3. 규제사각지대 – 나.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논의배경

규제·감독 부재 → 정보부재

↓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하나, 파악에 한계

* 장외파생상품 규모(09말) : 615조 달러

G20 합의

❖ 투명성 증대
- 모든 장외파생거래 거래저장소에 보고

❖ 리스크 축소
-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CCP를 통해 거래 (12년 말까지였으나 지연)

❖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 CCP 미이용 거래에 높은 자본 부과

추진 현황

❖ IOSCO-CPSS : CCP 설립, 운영기준 등을 마련

❖ BCBS : CCP 미이용 거래에 대한 자본부과 방안 마련 (13년부터 적용)

❖ G20 각국은 합의사항 이행중
- 美, EU 등 : CCP 기설립 및 추가 설립중
- 美 : 거래정보 보고, CCP 의무화 등에 관한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EU도 정책안 발표(09.10월)하고 13년말까지 관련 규제를 이행할 계획

◦ 최근 쟁점: 미국과 유럽 각기 규제작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소지

주: CCP (Central Counter-party)
CPSS : BIS 산하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3. 규제사각지대 – 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제

▪ 논의 배경

❖ 은행 규제 강화 →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추구
→그림자금융*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 주: 은행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는 기관 (entities)/상품(activities)

▪ 2011년 말 기준, 글로벌그림자 금융 규모는 67조 달러 수준

✓ 글로벌 은행시스템 130조 달러의 절반 수준

주: 글로벌금융자산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25개국 및 유로지역 17개국 기준

G20 합의 및 추진현황

❖ 로스까보스 정상회의('12.6월말)에서 FSB에게 정책권고안 마련 요청

❖ FSB를 중심으로 i) 모니터링 체계 강화 ii) 규제강화를 위한 5대 핵심분야* 권고안 마련을 추진 중

① 은행의 그림자금융과의 거래 규제
② MMF 규제
③ MMF 이외의 기타 그림자금융 규제
④ 증권화(securitization) 규제
⑤ 증권대차(security lending)/환매채거래(RP) 규제

➢ 5대 핵심분야 별로 '13. 9월 상트페테르브르크 정상회의에 최종 세부권고안이 제출

3. 규제사각지대 – 라. 신용평가사 규제

논의 배경

신용평가사 —(이해상충, 전문성 부족)→ 부적절한 신용등급 ←(과신)— 투자자

적시성, 정확성 결여

→ 위기가 진전된 후 일시에 신용등급을 대폭 하향 조정 → 위기 심화·가속화

G20 합의

등록	▪ 신용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록 필요 (Basel II 의 적격외부신용평가사(ECAI) 등이 규제 대상이 됨)
이해상충 방지	▪ 신용평가 모델 검토기구와 신용평가 담당기구 분리 ▪ 연간 매출 10% 초과 고객 공시 등
정보공개	▪ 구조화 상품 관련 정보 공시 등
감독강화	▪ 감독당국은 신용평가 과정의 질과 투명성 확보 및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평가 절차의 변경 요구 권한
신용평가 사용 축소	▪ BCBS는 건전성규제에 있어 외부신용등급의 축소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美, EU, 日 등 : 합의사항에 따른 신용평가사 규제 추진

• 특히, 美는 신용평가 이용축소, 신평사 책임 강화, 신평사 감독부서 설립 등을 담은 금융개혁법 공표(10.7월)

4. 금융권 책임분담방안

논의 배경

❖ 금융기관 부실 : 납세자 부담 vs. 금융권(금융기관, 주주, 채권자, 임직원) 부담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 ; 납세자만 부담, 금융권은?

✓ (피츠버그 정상회의) IMF에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요청

IMF 보고서

❖ ①수입, ②리스크 부담행위 축소, ③실행가능성 측면에서 3가지 방안 검토
→ 금융안정분담금(FSC)와 금융활동세(FAT)의 조합이 적절한 방안

방안	부과대상 (Tax Base)	방안에 대한 평가		
		수입	리스크 축소	실행가능성
금융안정 분담금 (FSC :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비예금부채	○	△	◎
금융활동세 (FAT : Financial Activity Tax)	이익, 보수규모	△	◎	○
금융거래세 (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금융거래	◎	○	△

* ◎ 효과 最大, ○ : 효과 大, △ : 효과 中

G20 합의 (토론토)

❖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수준의 원칙에 합의
* 원칙 : ① 납세자 보호 ②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신용흐름 보호 ④ 개별 국가의 상황 및 정책 등을 고려 ⑤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

→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5. 비협조적 지역- 역외금융센터(OFC)에 대한 규제

논의 배경

❖ 조세피난처, 역외 금융센터 등 : 낮은 세율, 규제·감독 미흡, 정보공유에 소극적

→ 각국의 재정상황 악화 (조세피난처로 도피한 자금규모 : 1.7조$ ~ 11.5조$, OECD 추산)
→ 불법 자금세탁을 위한 장소로 이용
→ 이들 지역을 통한 금융거래가 초래하는 리스크 인지 불가

G20 합의

❖ 비협조적 지역 : ①조세정보교환, ②자금세탁방지, ③ 건전성 정보교환 분야의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
- 조세정보교환 : OECD Global Forum, 조세정보교환기준
- 자금세탁방지 : FATF, AML/CFT 49개 권고사항
- 건전성정보교환 : FSB,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정보교환 등에 관한 기준

❖ 비협조적 지역 식별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식별 : 상호점검(peer review) 실시
- 대응조치 : 공표, 금융거래 제한 등

❖ 비협조적 지역 또는 저역량 국가에 대한 이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추진 현황

❖ 조세정보교환 분야 : 10.2월 부터 상호점검 실시

❖ 자금세탁방지분야 : 10.2월 28개 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발표

❖ 건전성정보교환 분야 : 현재 상호점검중

주: AML/CFT: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ontents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Ⅱ G20 금융규제·감독강화 논의

Ⅲ 미진한 과제 및 향후 전망

미진한 과제

1. 단기투기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및 통화정책 실효성 제고

- 금융위기의 주 요인인 **신흥시장국의 단기투기성자금이동 상시관리시스템** 체계화
- **중앙은행 통화정책**, 물가안정에서 자산가격 거품을 유발하는 **시중유동성 관리 병행**
  - 감독기구와 역할 분담,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위주 관리의 문제점 등

2. 불안전한 환율제도와 IMF 국제통화시스템 개편

- **다양한 환율제도와 불투명한 환율운용으로** 국제무역의 불균형과 시장불안 초래
-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의 창출** 필요
- **IMF 지배구조**의 지속 개선 및 기능과 역량의 획기적 제고

3. 미흡한 거시금융감독 체계 개선 및 국제공조체제 구축

-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과 금리, 환율, 주가, 자산가격** 등 종합 관리하는 감독체계
- 위기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공조시스템 체계화**

향후 전망

1. 위기극복 이후 개혁의지 후퇴

❖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G-20 재무장관 회의 중심의
국제금융체제개편(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논의 절반의 성과

2. 시장과 감독제도 + 역량 간의 비 대칭성

❖ 글로벌금융위기 원인(헤지 펀드/장외파생상품/그림자금융) 집중 금융감독규제 개혁

❖ 새로운 규제차익 지대 및 감독사각지역 발생으로 신종 리스크 발생 우려

3.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복잡 다기화된 국제통화제도(FX Regime),
빈번한 단기자본 이동, 불완전한 거시금융감독체계,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계속적으로 대형 위기 발생 가능성

❖ 위기 이후 미국, EU, 일본 등의 양적 완화로 주식 등 금융자산 거품 발생

➢ 미국의 Tapering 등 QE축소 시 제 2 의 위기 발생 우려

[부록1] G20 정상회의 및 FSB 출범

G 20 정상회의 출범

- 금융안정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G7보다 대표성을 강화한 국제협력기구의 필요성 대두
- 제1차 G20 정상회의 출범(08.11.15)
  :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1999년 출범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격상

금융안정위원회(FSB) 출범

- G7중심 FSF(Financial Stability Forum)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
  - ✓ G20 중 FSF 비회원이었던 국가(11) 및
  - ✓ 스페인·EC 신규 가입
- FSB에 G20의 금융감독규제 작업의 총괄 조정 기능 부여

G 7

국 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

G 20

지 역	국 가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남 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 럽	러시아, 터키, 호주, EU 의장국
아프리카	남아공

[부록2] 실천과제 (5개 분야, 47개 과제)- 2008년 워싱턴 회의

투명성 책임성 강 화	1	가치평가 기준 개선(복잡한 금융 상품 등)
	2	부외상품 회계 및 공시기준 개선
	3	복잡한 금융상품 공시개선
	4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지배구조 개선
	5	민간기구들이 헤지펀드 등에 대한 모범기준 제시
	6	양질의 단일회계기준 수립작업 추진
	7	당국과 회계기구는 양질의 기준 채택 위해 민간과 지속작업
	8	금융기관: 위험.손실 공시, 당국: 정확한 B/S 적기제공 노력
금융감독 .규제개선 / 규제체계	9	경기순응성 완화 권고사항 도출(IMF, FSF 등)
	10	각국은 자국 규제체계 검토, G20은 FSAP 참가
	11	업권 간 규제차이 및 규제미흡 제도.기관 검토, 권고사항 도출
	12	다국적 금융기관 단계적 축소위한 파산법 검토
	13	자본 정의 조화 필요(자본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
금융감독 .규제개선 / 건전성감독	14	CRA: 이해상충방지.공시강화, 복잡한 상품: 차별화된 평가
	15	국제증권기구 : CRA 준법 감독위해 채택한 기준.체제 검토
	16	충분한 자본유지 유도, 구조화된 신용.증권화활동 관련 자본기준 강화
	17	당국: CDS 및 OTC상품의 시스템감소 위한 조치 마련
	18	신용평가기관 등록
	19	국경간은행 유동성 감독관련, 국제적 일관성있는 접근방식 개발
금융감독 .규제개선 / 위험관리	20	당국은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21	유동성위험을 보다 잘 관리 할 수 있는 절차 개발
	22	금융사의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 측정할 수 절차 개발
	23	금융사는 위기상황 대체 모델을 재검토하고, 당국에 보고
	24	BIS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 개발 필요여부 검토 및 지원
	25	금융사는 과도한 단기이익추구 위한 내부 인센티브 마련
	26	은행은 구조화.증권화 상품에 대한 효과적 위험 관리 추진
규제 개선	27	금융혁신에 대응가능토록 국제기준기구들은 다른 기구들과 협력
	28	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거시경제.금융 모니터링
금융 시장 신뢰성 제고	29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30	각국은 시장위험요소에 대안 정보공유 촉진 및 법규 정비
	31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 보호 위한 협력 강화
	32	불법행위 위험있는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위한 조치 시행
	33	FATF는 자금세탁 근절업무 지속, WB.UN의 자산회수 제안지지
	34	과세당국은 OECD 등 활용 지속적 과세정보 교환 촉진
국제 협력 강화	35	당국은 다국적 금융기관 감시강화 및 이들과 정기적 교류 추진 필요
	36	당국은 국제적 금융위기 효과적 관리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
	37	당국은 회계기준, 예금보호 등 조화필요 분야 진전노력 강화
	38	당국은 시장안정 위한 일시적 조치 부작용 최소화 노력
국제 금융 기구 개혁	39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40	IMF와 FSF간 협력강화(거시정책대응, 조기경보기능 제고)
	41	IMF : 회원국을 기반으로 FSF등과 협력통해 현 위기 교훈 도출
	42	IMF, WB 등 기타 국제기구 재원적정성 검토, 필요시 확대 준비
	43	신흥국의 신용시장 접근성 회복 통해 지속가능성장 기반 지원
	44	시장상황 악화시 국제기구지원은 건전정책 추진 국가에 지원
	45	브레튼우즈체제 포괄적 개혁. 국제기구에 신흥국 참여 확대
	46	IMF: 모든 국가 경제상황 감시체계 강화, 특히 금융분야
	47	선진국, 국제기구는 신흥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제공

: 단기 과제

: 장기과제

[부록3] G20 금융규제•감독 개혁 주요과제

워싱턴 정상회의 ('08.11)

❖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5개 분야 47개 실천과제(금융분야 41개)확정**

런던 정상회의 ('09.4)

❖ **8개 분야 구체적 행동계획 도출**

① FSB설립, ② 국제협력강화(위기대응, 정리절차), ③ 건전성규제(자본의 질·량, 유동성), ④ 규제범위확대(헤지펀드, 장외파생 등), ⑤ 보상체계 개혁, ⑥ 비협조적 지역 감시, ⑦ 회계제도, ⑧ 신용평가회사 규제 개혁 등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 **8개 개혁과제를 중요성에 따라 6개 우선과제로 재분류**

① 은행 자본규제 강화, ② SIFI의 도덕적 해이 축소, ③ 보상원칙 이행 강화, ④ 장외파생 규제 강화, ⑤ 회계기준 개선, ⑥ 비협조적 지역 감시 강화

토론토 정상회의 ('10.6)

❖ **11월 서울 정상회의 마무리 핵심과제 선정**

① 건전성규제 강화, ② 효과적 감독, ③ 부실금융회사 정리체계 구축 및 SIFI 규제 ④ 투명한 국제적 평가와 상호 협력

[부록3] G20 금융규제•감독 개혁 주요과제

서울 정상회의 ('10.11)

❖ **Basel III에 대한 합의 및 핵심과제 논의의 큰 틀 설정**

① 은행 건전성 규제(Basel III), ② SIFI 규제·감독 체계, ③ 장외파생상품 규제,
④ 신용평가기관(CRA)에 대한 의존도 축소,
⑤ 신규과제(거시건전성 정책체계·수단 마련,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규제 이슈 등)

깐느 정상회의 ('11.11)

❖ **금융개혁 심화 및 이행 합의**

① 은행건전성 규제(Basel III), ② SIFI 규제감독체계, ③ OTC 파생상품 규제
④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⑤ 보상 규제, ⑥ 금융개혁 감독 강화

로스까보스정상회의 ('12.6)

❖ **기존 과제의 이행 확약 및 신규 과제 발굴**

① SIFI 규제 확대(D-SIB, G-SII), ② 신용평가사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
③ 글로벌 법인별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시스템 구축,
④ FSB의 역량 강화, ⑤ 글로벌 금융규제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EOD